

평택-시흥 고속도로 민 간 투자 사업  
변경 실시 협약

2009. 12. 30.

국 토 해 양 부  
제이서해안고속도로(주)

## 변경 실시 협약

국토해양부장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)과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평택-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(이하 “본 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18일 실시협약(이하 “실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 하였던 바, 동 사업을 진행하던 중,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, 자금재조달 규정 일부 완화,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의 한시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[기획재정부공고 제2009-14호(2009년 2월 26일),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-162호(2009년 10월 6일)]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금융약정 체결을 지원코자 실시협약의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여 2009년 12월 30일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### 제 1 조 정의

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### 제 2 조 총사업비의 변경



(1) 실시협약 제13조 제7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당 초	신 설
	본 협약 제13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증가되는 총사업비는,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“보상비(민간부담분)”를 전용하여 우선 사용하며, 그 잔액 상당액은 보상비에 사용한다.

### 제 3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

(1) 실시협약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25.05%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.	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.00%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.

(2) 실시협약 제1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민간투자비의 25.05%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	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민간투자비의 15%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조정되는 총사업비 등 본 협약의 제반사항은 최초 통행료 산정시점에서 본 협약 제75조의 자금재조달 절차에 따라 반영하기로 한다.

#### 제 4 조 보상업무

(1) 실시협약 제5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신 설
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비 중 433억원(2004년 6월 30일 불변 가액 기준)에 대해서는 총사업비(총민간사업비)에 포함하여,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제13조 제7항에 따라 전용하고 남은 잔액은 정부의 보상비 재원에 충당하기로 한다.	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비 중 433억원(2004년 6월 30일 불변가액 기준)에 대해서는 총사업비(총민간사업비)에 포함하여,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제13조 제7항에 따라 전용하고 남은 잔액은 정부의 보상비 재원에 충당하기로 한다.

#### 제 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

(1) 실시협약 제76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당 초	변 경
	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(공고 제2009-14호, '09.2.26)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인하(20%→15%)와 본 사업의 금융약정 체결이전 농협, 기업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차입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당초 25.05%에서 20.00%로 인하하는데 따른 효과에 대하여는 최초통행료 산정시점에서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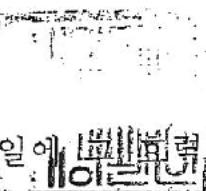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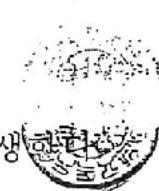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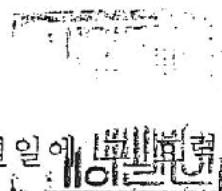
## 제 6 조      부록의 변경

- (1) 실시협약 별표13을 변경실시협약 별표1과 같이 변경한다.
- (2) 실시협약 별표3, 별표4, 별표7, 별표8, 별표11, 별표12 및 별표12-1은 총사업비변경, 민간부담 보상비재원의 실제 투입실적 및 자금재조달 규정을 반영하여 최초통행료산정 시점에서 변경하기로 한다.

## 제 7 조      실시협약과의 관계

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## 제 8 조     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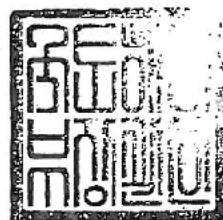
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  발生效되며, 

(서명란은 다음 장에)
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

2009년 12월 30일

대        한        민        국  
국토해양부장관     정     종     환



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 
대 표 이     사     원     은     시

